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 장 구영민 042-481-5213 사무관 조상흠 042-481-592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9년 3월 18일(월) 배포(09:00)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침해 범죄, 특허청이 뿌리 뽑는다!

-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출범 -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을 방해하는 지식재산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3월19일부터 특허청이 직접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를 수사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위 '짜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란, 행정기관이 일반경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게다가 특허, 영업비밀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판단은 물론이고 신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따라서 특허, 영업비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가풀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하여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1,100여명의 심사, 심판 인력을 보유한 특허청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이유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으로 보인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 역시 사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남의 기술,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혁신성장의 큰 걸림돌”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5812,8324)에 할 수 있다.

※ 붙임 : 특허·디자인·영업비밀 형사 사건 통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 조상흠(☎ 042-481-5923)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1】 특허·디자인·영업비밀 형사 사건 통계 (출처 : 법무부)

□ 특허법 위반 사건 건수

관할 검찰청	2014		2015		2016		2017		2018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4	93	29	78	44	102	72	191	33	6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3	24	8	14	11	27	8	24	13	3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4	56	21	43	24	50	15	32	12	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3	4	4	6	5	10	8	11	4	6
서울서부지방검찰청	9	14	10	19	5	11	7	22	13	23
의정부지방검찰청	35	51	33	60	21	41	33	61	24	46
인천지방검찰청	43	67	28	48	31	49	28	60	36	64
수원지방검찰청	74	148	78	159	81	148	81	146	47	85
춘천지방검찰청	9	37	5	17	4	9	3	3	5	7
대전지방검찰청	15	27	26	69	92	176	47	96	54	154
청주지방검찰청	5	8	6	11	13	23	6	8	5	7
대구지방검찰청	36	56	42	66	32	57	26	44	17	29
부산지방검찰청	25	46	22	34	12	19	14	29	23	32
울산지방검찰청	4	13	11	22	5	11	1	1	2	2
창원지방검찰청	9	13	7	14	14	28	7	10	8	14
광주지방검찰청	24	44	18	33	8	16	6	8	8	14
전주지방검찰청	6	11	5	8	6	7	4	11	6	33
제주지방검찰청	1	1	1	1	1	1	1	1	0	2
합계	379	713	354	702	409	785	367	758	310	642

※ 접수인원은 해당 연도내에 수리한 인원(新수)으로, 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 인원(舊수)은 불포함

□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건 건수

관할 검찰청	2014		2015		2016		2017		2018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71	109	39	70	44	80	32	71	26	39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20	29	10	18	6	9	11	19	20	32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43	64	24	44	17	27	23	35	10	17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32	39	25	43	13	17	14	40	18	27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33	44	15	28	11	24	11	20	11	16
의정부지방법검찰청	50	67	28	39	27	51	42	79	46	76
인천지방법검찰청	66	89	45	70	37	54	30	58	54	113
수원지방법검찰청	74	101	50	62	42	81	51	130	72	151
춘천지방법검찰청	2	9	1	1	1	1	0	0	3	6
대전지방법검찰청	19	38	15	26	29	58	26	40	28	38
청주지방법검찰청	9	17	8	11	1	2	3	3	10	11
대구지방법검찰청	30	52	37	69	36	50	32	49	34	44
부산지방법검찰청	23	33	12	14	18	25	12	21	13	25
울산지방법검찰청	2	2	4	4	3	3	1	2	7	11
창원지방법검찰청	4	6	9	16	5	8	4	7	5	10
광주지방법검찰청	4	4	9	10	7	9	14	21	7	11
전주지방법검찰청	3	4	3	4	5	9	1	2	5	8
제주지방법검찰청	0	0	1	1	3	3	0	0	0	0
합계	485	707	335	530	305	511	307	597	369	635

□ 영업비밀 누설 사건 건수

관할 검찰청	2014		2015		2016		2017		2018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62	182	66	172	64	205	56	130	46	112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12	31	12	25	19	35	22	83	12	27
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	17	41	22	61	36	98	20	52	12	24
서울북부지방법검찰청	9	19	7	14	9	13	8	23	5	18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14	34	6	6	13	23	5	12	13	25
의정부지방법검찰청	14	30	15	43	18	40	15	33	17	31
인천지방법검찰청	40	85	39	86	25	58	43	98	40	101
수원지방법검찰청	76	215	66	163	70	189	88	237	93	249
춘천지방법검찰청	2	2	3	6	5	10	2	3	2	2
대전지방법검찰청	16	52	19	60	33	95	43	131	37	107
청주지방법검찰청	7	20	11	24	10	26	11	20	6	6
대구지방법검찰청	14	43	13	25	23	38	13	34	20	47
부산지방법검찰청	12	47	12	22	19	57	25	57	26	54
울산지방법검찰청	16	44	6	19	8	19	2	12	3	16
창원지방법검찰청	12	35	17	37	26	51	18	62	17	62
광주지방법검찰청	7	17	8	14	9	13	4	9	13	28
전주지방법검찰청	6	18	11	31	3	12	7	13	5	6
제주지방법검찰청	0	0	0	0	1	1	1	6	1	1
합계	336	915	333	808	391	983	383	1015	368	916

【붙임2】 특허청 특사경 근거 법률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38의2.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35의2. 제5조제38호의2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특허법」 제225조제1항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 3.19. 시행 개정법에 신설된 조문은 밑줄로 표시